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559

발의연월일: 2020. 11. 19.

발 의 자:인재근·김홍걸·서영석

양경숙・양정숙・이규민

이용빈 · 최연숙 · 최혜영

홍성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은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 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료기관 등에 인도할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어 피해장애인 쉼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의 시설에 학 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입소를 요청하여도 해당 시설 등에서 이를 거 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해장애인 쉼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의 시설에 학대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학

대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59조의7제2항 및 제90조제3항).

법률 제 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7제2항 중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을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해당 시설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
-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 호에 따른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4.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쉮터
-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

폭력피해자보호시설

- 8.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 9. 그 밖에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90조제3항제3호의5를 제3호의6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5. 제59조의7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 유로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거부한 시설이나 의료기관의 장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학대현	2
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	
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	
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u>장애인권익옹호기</u>	<u>다음 각 호의 시설</u>
<u>관 또는</u> 의료기관에 인도하여	이나
야 한다. <u><후단 신설></u>	<u>이 경우 해당 시설이나 의</u>
	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
	이 장애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
	여서는 아니 된다.
<u> <신 설></u>	1.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
	<u>인 쉼터</u>
<u><신 설></u>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
	<u>호시설</u>
<u><신 설></u>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
	1항제1호에 따른 노숙인일시
	<u>보호시설</u>
<u><신 설></u>	4.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③ ~ ⑥ (생 략) 제90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4. (생 략) <신 설>

- 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턴
-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8.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 9. 그 밖에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제9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3 -----
 - -----.
 - 1. ~ 3의4. (현행과 같음)3의5. 제59조의7제2항 후단을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의5.
 (생 략)

 4. ~ 7.
 (생 략)

 ④ (생 략)

장애를 이유로 학대받은 장애 인의 인수를 거부한 시설이나 의료기관의 장 3의6. (현행 제3호의5와 같음) 4. ~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